

7월 시행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65호, 2021.**

**1. 5.,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가 제한 없이 가능하여, 실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 받는 사람은 소수에 그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 사유를 명시하였고, (i)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ii)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iii)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였고, 사업주는 이러한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